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9. 8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5월 27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년 5월 31일
다. 상정일자 : 1) 제25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4. 6. 15) 심사결과 : 보류
2) 제27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4.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제1항)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를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대현)

본조례 제정근거는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공포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내지 제37조의 5와 1994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이 마련한 준칙(안)을 근거로 하여 입안된 것이나 영등포구청장이 입안한 조례 제3조(구성) 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은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타 사항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9. 8 임병섭의원의 1인

나. 수정이유

제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본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할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과 관련 대립된 견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직접 건설부장관에 질의한 바 부위원장 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회신요지와 본 의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

다. 수정안의 주요골자

제3조(구성)의 제1항과 2항, 제4조의 제2항 내용중 부위원장에 대한 내용전체를 삭제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출년월일 : 1994년 9월 8일

제출자 : 임병섭의 1인

1. 수정이유

제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본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할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과 관련 대립된 견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직접 건설부장관에 질의한 바 부위원장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회신요지와 본 의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

2. 수정안의 주요골자

제3조(구성)의 제1항과 2항, 제4조의 제2항 내용중 부위원장에 대한 내용전체를 삭제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 안	수 정 안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법 제3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③생 략	③원안과 같음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생 략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원안과 같음 ②삭 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34	제 출 년 월 일 : 1994년 5월 27일 제 출 자 : 영 등 포 구 청 장
----------	-----	---

1. 제 안 이 유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함.

2. 주 요 골 자

- 가.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제1항)
- 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를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함.(안 제6조)

3. 관 계 법 규

-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법 제3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7 조(수당지급)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